

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(매니저 5급) 공개채용 면접전형 결과 안내

□ 직원(매니저 5급)-면접전형 결과

○ 최종합격자 : 100007

○ 예비합격자 : 1순위. 100009
2순위. 100008

※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및 중도포기하는 경우 임용
심의

※ 예비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('24.02.29.)로부터 3개월
이내('24.05.28.)까지 유효

임용후보자 등록요령

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(매니저 5급) 공개 채용 합격자로서 동센터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등록하십시오.

1. 등록기간 첫 출근일 제출
2. 등록장소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
3. 구비서류

- | | |
|---|----|
| ① 임용후보자등록원서(소정용지)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을 부착하십시오 | 1매 |
| ②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| 1매 |
| ③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| 1매 |
|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재학증명서) | 1통 |
| ⑤ 경력증명서(경력이 있을 경우 한함.) 및 기타 증빙서류
※국민건강보험료-자격득실확인서(직장가입자),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| 1통 |
| ⑥ 주민등록등본, 병적증명서(해당자의 경우) | 1통 |
| ⑦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) | 1통 |
| ⑧ 사진(반명함판, jpg파일 별도제출) | 2매 |

※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철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되 등록원서에 반드시 사진을 부착
(응시원서 제출시 기재출한 서류는 별도 제출 불필요)

등 록 번 호	임 용 후 보 자 등 록 원 서						수험 번 호		
1.성명 한글 (한문) ()	2.생년월일 . . .(만 세)		4.성별 남 □ 여 □		5.시험합격종별 ○			※등록심사	
	3.주민등록번호							사진 대조	서류 심사
7.현주소	① (전화 번)						(사진첨부) ※반명함판		
	② (전화 번)								
8.병 역	필	ㄱ.역종 ㅁ.군번	ㄴ.군별 ㅂ.입대년월일	ㄷ.병과	ㄹ.계급 ㅅ.제대년월일				
	미필								
9.학 력									
부터		까지		학 력			전공,부문,과목		
10.자격,면허									
년 월 일		종 별			발행기관				
11.경 력									
부터		까지		경 력 사 항			발령청		

※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

12.가 족 사 항

본인과의관계	성 명	비 고

13.첨부서류	학력증명서	경력증명서	주민등록등본	가족관계증명서	체크리스트

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,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.

년 월 일

출 원 자 인

⑨인

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귀하

21.우무인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있음 ☐ 없음 ☐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-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해당 ☐ 비해당 ☐

1, 2, 4-1, 4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해당 ☐ 비해당 ☐

년 월 일

지 원 자

(서명)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	채용방법	공개 채용	채용직위(직급)	직원(매니저5급)
	채용사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(매니저5급) 공개 채용			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	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채용대상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